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

(2025.1.1. 기준)

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4조 [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]	▶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	제15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]	▶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측정, 건강관리 (건강진단 등),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, 재발 방지대책 수립,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3	제16조 [관리감독자]	▶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, 착용 교육/작업의 지휘 감독,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4	제17조 [안전관리자] 제18조 [보건관리자] 제19조 [안전관리 담당자]	▶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외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, 조언 업무수행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각종항당)
5	제24조 [산업안전보건위원회]	▶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6	제25조 [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]	▶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(시행규칙 [별표 3]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7	제29조 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]	▶ 정기교육 ▶ 관리감독자 교육 ▶ 채용 시 교육 ▶ 작업내용 변경 시 ▶ 특별안전보건교육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8	제32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]	▶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·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34조 [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]	▶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0	제36조 [위험성평가의 실시]	▶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(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: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1	제37조 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]	▶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(「산업안전보건법」, 시행규칙 [별표 7, 8, 9] 기준) (금지표지/경고표지/지시표지/안내표지/관계자와 출입금지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2	제38조 [안전조치] 제39조 [보건조치] 제40조 [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]	▶ 기계/폭발성물질/전기 및 굴착/하역/중량물 취급 및 추락/토사붕괴/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▶ 전기/흡/미스트 및 방사선/소음진동 및 정밀공작/단순반복 및 환기/채광/조명/보온 등 작업장내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▶ 근로자는 제38조 [안전조치] 및 제39조 [보건조치]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	·근로자시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·15만원 이하의 과태료
13	제41조 [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]	▶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14	제42조 [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]	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(시행령 4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·이전·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·심사를 받아야 함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15	제44조 [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]	▶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(PSM)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. (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)	·적합통보전 가동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·미제출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6	제51조 [사업주의 작업중지] 제54조 [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]	▶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▶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	·위반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·보고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7	제52조 [근로자의 작업중지]	▶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▶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하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	
18	제57조 [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]	▶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,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-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	·은폐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·미보고 및 거짓보고: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9	제58조 [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]	▶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	10억원 이하의 과징금
20	제63조 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]	▶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 제외)	근로자시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21	제64조 [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]	▶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*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*작업장 순회점검 *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등소, 자료 지원 *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 *위생시설 이용, 설치 협조 *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지시,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	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시설 미합조 (500만원 이하 과태료)
22	제65조 [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]	▶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-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·사용 운반, 질식 또는 봉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23	제80조 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	▶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24	제93조 [안전검사]	▶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,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,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), 고소작업대(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)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 - 검사 주기: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5	제114조 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 제115조 [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을 질질기 등의 경고표시]	▶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▶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	·미게시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7개소당) ·미교육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대상자 1명당) ·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6	제119조 [석면조사] 제122조 [석면해체, 제거]	▶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 함. ▶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.	·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·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·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27	제125조 [작업환경측정]	▶ 소음(80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(「산업안전보건법」, 시행규칙 [별표 21]) ▶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	·1천만원 이하의 벌금 ·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8	제128조의 2 [휴게시설의 설치]	▶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의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	·미설치: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·기준위반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29	제129조 [일반건강진단] 제130조 [특수건강진단 등]	▶ 일반건강진단 ▶ 특수건강진단 ▶ 배치전건강진단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30	제164조 [서류의 보존]	▶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·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·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·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·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노사협의체 회의록 ·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·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· 안전인증대상자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·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각서류마다 적용)